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05
------------	------

발의연월일 : 2016. 10. 31.  
발의자 : 김종석 · 전희경 · 김성태  
김선동 · 윤한홍 · 경대수  
김학용 · 김광림 · 정태옥  
김한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단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관의 제정 · 변경 등(안 제52조)

금융회사의 개별약관 제·개정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소비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를 유지하도록 함.

나. 약관 작성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항 신설(안 제65조의3제19호)  
제52조제1항에 따른 약관 작성방식을 위반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52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금융위원회는 제2항”으로,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를 “보고 또는 신고 받은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전”을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 받은 약관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건전”으로, “제1항에 따른”을 “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제38조, 제52조 또는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30 이하

## 부 칙

i)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u>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다만, 이용자의 권리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② 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 -----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u>&lt;단서 삭제&gt;</u></p> <p>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p> <p>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p> <p>② ----- -----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 ----- -----. 다만, 이용자의 권리</p>

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은행  
은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④ -----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 받은 약관이 제  
1항을 위반하거나 건전--- 그  
-----  
-----.

⑤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

<p><u>보고의 시기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u></p> <p>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u>제38조 또는 제62조</u>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1. ~ 18. (생략)  <u>&lt;신설&gt;</u></p>	<p><u>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p> <p>제65조의3(과징금) -----  -----  ----- <u>제38조, 제52조 또는 제62조</u>-----  -----  -----  -----.</p> <p>1. ~ 18. (현행과 같음)  <u>19.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약관이 적용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30 이하</u></p>
---	--